



## 밀어내기 근절과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제조업자 준수사항과 관련하여

김태호 | 회원사업팀 차장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2011년 기준 9.18ℓ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고 있는 188개 국가 중 62위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OECD 34개 회원국을 기준으로도 22위로 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알코올소비량은 지난 1980년대 초반에 9ℓ 대로 안정된 이후 대체로 30년간 평균 9.2ℓ 내외(1989년 최고 9.83ℓ, 2001년 최저 8.64)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2008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는 과도하게 술을 마시는 음주문화와 폭력·사건·사고들이 술과 연관지어 언론에 보도되거나 주류제조사들의 주류출고·판매량에 대한 자료를 경쟁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우리의 직장 회식문화를 통해 음주행태를 살펴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공연을 즐기며 간단한 식사로 회식을 대신한다거나, 가볍게 식사와 곁들인 반주 정도의 회식이 대부분이며, 2차로 연결되는 비중도 감소하는 등 예전에 비해 과도한 회식문화는 점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



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음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류판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의 주류판매는 정체되거나 소폭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류제조사들은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치열한 홍보와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형매장에서는 주류에 다른 제품들을 끼워 팔거나 소비자경품을 내걸기도 하고 음식업소에서는 주류나 상품들을 주며 제품을 알리는데 주력하기도 한다.

최근 ‘밀어내기’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식품, 주류, 공산품 등의 유통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과 공산품 그리고 일부 탁·약주, 전통주는 해당제조사 제품만을 판매하는 대리점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탁·약주, 전통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류는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은 종합주류도매업체에 주류를 납품해 유통업소나 소매업소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주류전자결제시스템의 주류대금결제방식(대금입금후 주류출고 방식)을 운영하며 여러 제조사의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하므로 ‘밀어내기’와 같은 불공정한 거래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은 ‘밀어내기’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 주류전반에 대한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주류 불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유통질서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주류업계와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지도와 교육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주류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자율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주류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인 밀어내기, 제품강매, 끼워팔기, 리베이트 제공, 무상주 제공, 미출 행위, 시음행사, 경품행사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와 출고감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 명령위임 고시뿐만 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향후 주류제조사가 관련고시와 법을 위반하는 판촉행위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나친 과당경쟁을 한다면 소비자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며, 잘못된 불법거래행위를 한다면 올바른 음주문화 개선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칫 문제음주자를 증가시키거나 과음을 불러 올수도 있고 청소년과 임산부의 음주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국세청고시 2012-72호)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1.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주문하지 않은 주류나 주문량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여서는 안 된다.
2. 무자료 헐값거래 및 위장거래를 하지 아니할 성실한 자에게 정상 판매능력에 맞는 적정물량만을 공급하여야 한다.
3. 주류거래 약정, 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주류 판매대금이나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이나 시설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4. 세무서장이 주류유통 정상화를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해 공급물량의 감량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세무서장이 무자료 주류를 단속한 결과, 예치한 주류를 해당 주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하여금 인수도록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정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 주류매출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거래상대방과 짜고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리 작성하여 교부하고, 주류는 추후에 출고시킴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정하거나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고시'를 위반한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 |



###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7.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이제 주류제조사는 지나친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주류거래문화를 바로 잡는데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사업자단체 또한 회원사를 상대로 정기적인 교육으로 주류거래관련법 및 고시내용을 주지시키고, 정부차원에서는 주류제조사, 주류도매사, 대형 매장, 일반음식점 등 유통단계별로 관련고시나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처럼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노력하고 관련단체나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한다면 업계의 경영건전성과 건전한 주류거래문화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